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이 주요 내용임.

□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현황

기준 : '21~'22년말

구 분	가구수	인 원	담당부서	비 고
합 계	189,043	366,157		
기초생활수급자	58,468	78,709	복지정책과	
차상위수급자	21,998	32,335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	97,966	장애인복지과	
홀로사는 노인	102,310	102,310	노인복지과	
한부모 가정	6,267	16,117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다문화 가정	-	38,720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현재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 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전자금(119천사기금)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된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명에게 지원하였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735만원 가량으로 가구당 7만원씩 최대 7일간 추계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주민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종류,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8. 29. ~ ‘23. 9.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23년 9월 기준 11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충청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옥천, 단양, 제천군에서 시행 중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